

제 230 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8. 1.16.)

# 조례·일반의안 검토 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신 능 호]

# 목 차

---

1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2	거창군 향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3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	16
4	『거창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	23

# 〔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발의일자: 2018. 1. 4.
- 나. 발 의 자: 형남현 의원 대표발의(형남현·이성복·강철우 의원)
- 다. 회부일자: 2018. 1. 9.

## 2. 개정이유

-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신설에 따른 시행 전의 태양광발전사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적용을 받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개발행위허가 기준 신설에 따른 적용 시점을 변경함(부칙안 제2조)
  -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 ⇒ 조례 시행 후 최초로 태양광발전사업허가를 받은 경우부터

## 4.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및 별표1의2, 「개발행위 허가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569호)
- 나. 예산 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개정 반대(도시건축과)

라. 기타 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18. 1. 9. ~ 1. 15.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5) 도내 개정완료: 없음(기준 신설 후 개정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본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은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관련 조례 제정(2017.5.10. 시행)에 따른 조례 시행 이전의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대상에 대해서는 적용을 받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두어 전기발전사업허가자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다만 집행부 사전의견 조회 결과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발전(태양광)사업허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대상이 아닌 별개의 기준을 가지고 하는 허가 절차로 법적 구제 대상이 아니며, 또한 조례 개정 이전에 전기발전(태양광)사업허가를 득하였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군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불허가 처리되는 사항도 있으며

- 「전기사업법」 제9조에 따라 전기사업허가자의 준비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어, 본 건 조례 부칙의 개정으로 향후 새로이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할 때마다 기득권 보호 명목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어 조례 개정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며,
- 또한, 이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전기발전사업허가 이후 사업개시 신고하지 않은 96건 중 51건은 조례 개정 이후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사업개시 중에 있으며, 조례 개정이후 전기발전사업 허가가 126건(개발행위 허가 27건, 개발행위 허가 준비 중 99건)이루어져, 기존의 개발행위 기준을 적용할 시 행정의 일관성 유지의 어려움과 불공정 시비가 일어날 소지가 많으며,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 조례 제정 취지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여러 제반 여건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전기사업허가 현황(2018. 1. 8.기준)】**

(단위: 건)

구 분	사업 허가	사업 개시	개 발 행 위			비고
			소계	공사 준비중	신청 준비중	
계	317	143	174	30	144	
'17.5.10 이전	191	130	61	16	45	'17.5.10 이전 사업 미개시 96건
'17.5.10 이후	126	13	113	14	99	

-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의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2017.3.)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로 인하여 보급에 애로가 있어 제한을 폐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태양광 보급사업 관련 인센티브 제공” 등 태양광 발전시설의 보급·확산을 촉진하고 있으며,

- 기 전기사업 허가 이후 일률적인 거리제한 조례에 근거하여 개발행위 인허가 불허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 등 선의를 피해를 보는 민원인도 있을 수 있으므로 조례 개정으로 행정의 신뢰성 회복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전기허가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사업(태양광 발전시설)의 성공과 지역주민들의 소득증진 및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농촌 태양광 사업 등 태양광 주민수용성 확보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6. 참고자료

### ● 관련법령 발췌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7.1.20.] [법률 제13797호, 2016.1.19., 타법개정]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군관리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14.>

1. 시가화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 유보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3. 보전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기반시설의 설치·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안(이하 "성장

관리방안"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3.7.16.>

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832호, 2017.2.3., 타법개정]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 ② 법 제5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 ③ 법 제5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별표 1의2] <개정 2016. 6. 30.>

**개발행위허가기준** (제56조 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가 기준
가. 공통분야	(1) 조수류·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2)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 국방상 목적 등에 따른 원형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계획 <b>조례</b>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 <b>조례</b> 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해당 토지의 경사도 및 임상(林相) (나) 삭제 <2016. 6. 30.> (다) 표고,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排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3)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에 관한 조치가 포함된 개발행위내용에 대하여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제55조제3항제3호의2 각목 외의 부분 후단 및 제57조제4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

	<p>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시·군 계획<b>조례</b>로 정하는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p> <p>(가) 골프장, 스키장, 기존 사찰, 풍력을 이용한 발전시설 등 개발행위의 특성상 도시·군<b>계획조례</b>로 정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나) 지형 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도시·군<b>계획조례</b>로 정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나. 도시·군 관리계획	<p>(1) 용도지역별 개발행위의 규모 및 건축제한 기준에 적합할 것</p> <p>(2)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p>
다. 도시·군 계획사업	<p>(1) 도시·군<b>계획사업부지</b>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개발행위를 제외한다)</p> <p>(2) 개발시기와 가설시설의 설치 등이 도시·군<b>계획사업</b>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p>
라. 주변지역과의 관계	<p>(1)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군<b>계획</b>으로 경관<b>계획</b>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p> <p>(2)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의 방지가 가능하여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정,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허가의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3) 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축이 절단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로 배수가 변경되어 하천·호소·습지로의 유수를 막지 아니할 것</p>
마. 기반시설	<p>(1)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p> <p>(2)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p> <p>(3) 도시·군<b>계획조례</b>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p>
바. 그 밖의 사항	<p>(1)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목적이 도시·군<b>계획</b>에 적합할 것</p> <p>(2)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입목의 벌채가 수반되지 아니할 것.</p>

##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가 기준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p>(1)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 또는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과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할 것. 이 경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또는 토</p>

	<p>석의 채취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와 동시에 할 수 있다.</p> <p>(2)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b>조례</b>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나. 토지의 형질변경	<p>(1) 토지의 지반이 연약한 때에는 그 두께·넓이·지하수위 등의 조사와 지반의 지지력·내려앉음·솟아오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여 흠바꾸기·다지기·배수 등의 방법으로 이를 개량할 것</p> <p>(2)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옹벽 또는 석축의 설치 등 도시·군계획<b>조례</b>가 정하는 안전조치를 할 것</p>
다. 토석채취	<p>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허가는 시가화대상이 아닌 지역으로서 인근에 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군계획<b>조례</b>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국민경제상 중요한 광물자원의 개발을 위한 경우로서 인근의 토지이용에 대한 피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라. 토지분할	<p>(1)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p> <p>(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이하 이 칸에서 "분할제한면적"이라 한다) 이상으로서 도시·군계획<b>조례</b>가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할 것</p> <p>(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안에서의 토지분할이 아닐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다른 토지와 의 합병을 위하여 분할하는 토지</li> <li>2) 2006년 3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토지</li> <li>3) 그 밖에 토지의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토지</li> </ol> <p>(다) 토지분할의 목적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그 개발행위가 관계법령에 따라 제한되지 아니할 것</p> <p>(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관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b>조례</b>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p>

	<p>(2)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p> <p>(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기존묘지의 분할</p> <p>(나) 사설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분할(「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p> <p>(다) 사설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 도로로서의 용도가 폐지되는 부분을 인접토지와 합병하기 위하여 하는 분할</p> <p>(라) &lt;삭제&gt;</p> <p>(마)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토지경계선을 시정하여 당해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분할 후 인접토지와 합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할 것. 이 경우 허가신청인은 분할 후 합필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분할 후 남는 토지의 면적 및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가 합필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li> <li>2) 분할전후의 토지면적에 증감이 없을 것</li> <li>3) 분할하고자 하는 기존토지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고, 분할된 토지 중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를 합필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li> </ol> <p>(3) 너비 5미터 이하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p>
<p>마.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p>	<p>당해 행위로 인하여 위해발생, 주변환경오염 및 경관훼손 등의 우려가 없고, 당해 물건을 쉽게 옮길 수 있는 경우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p>

3. 용도지역별 검토사항

검토 분야	허가 기준
<p>가. 시가화 용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일 것</li> <li>2) 개발을 유도하는 지역으로서 기반시설의 적정성,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경관 보호·조성 및 미관훼손의 최소화를 고려할 것</li> </ol>
<p>나.유보용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59조에 다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자연녹지지역일 것</li> <li>2) 지역 특성에 따라 개발 수요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지역으로서 입지타당성, 기반시설의 적정성,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경관 보호·조성 및 미관훼손의 최소화를 고려할 것</li> </ol>

다.보전용도	1) 법 제59조에 다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일 것 2) 개발보다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입지타당성, 기반시설의 적정성,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경관 보호·조성 및 미관훼손의 최소화를 고려할 것
--------	--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시행 2015.8.13] [국토교통부훈령 제569호, 2015.8.13, 타법개정]

제1장 총 칙

제1절 개발행위허가지침의 목적

1-1-1.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절차·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여 개발행위허가제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개발행위허가의 의의 및 운영원칙

1-2-1. 개발행위허가제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하여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고,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여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적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며,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1-2-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허가권자”라 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하거나 정한 범위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를 마련하거나 법령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개발행위허가제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기준은 이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2-3. 이 지침은 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지침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지역실정 또는 당해 구역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침의 세부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밝히고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거창군 향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8. 1. 4.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8. 1. 9.

## 2. 개정이유

- 거합산 향노화 약용식물 상품화 지원사업인 거창약초유통 센터를 설치하여 약초 및 향노화 제품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법령 재기재 사항 삭제함(안 제8조제1항 후단)

- 삭제: 위촉 위원의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 나. 수당규정 삭제함(안 제12조)

- 위원회 출석수당 지급근거: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 다. 거창약초유통센터 규정 신설함(안 제12조~제14조)

- 설치 및 위치: 약초 및 향노화 제품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거창읍 거합대로 3372 일원에 설치

- 기능: 약초의 순회수집·집하·선별·소분·전처리 및 저장, 약초와 향노화 제품의 전시·판매 및 마케팅, 향노화 제품 개발
- 위탁: 약초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근거 마련

## 4.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나. 예산 조치: '18년 180백만원 예산 확보
-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예산담당)
- 라. 기타 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17. 12. 1. ~ 12. 21.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4) 비용추계서: 붙임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17년 12월 준공한 『거창약초유통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약초의 수집·집하·전처리 및 저장, 향노화 제품 개발, 마케팅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거창군 향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위탁운영
- 활성화 사업 예산(시스템 및 프로그램, 약초전처리, 마케팅 등)

#### 2. 비용추계의 결과

##### 가. 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합계
총 비용(a - b)		180	100	100	50	50	480
세출	도비	-	-	-	-	-	-
	군비	180	100	100	50	50	480
	소계(a)	180	100	100	50	50	480

#### 3. 관련 의견

- 시설물 운영을 위한 기본 장비구입비, 위탁운영비 등이 매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1. 세출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합계
합 계	180	100	100	50	50	480
시설장비 구입비	80	0	0	0	0	80
위탁운영비	100	100	100	50	50	400

#### 2. 사업효과

- 이 시설 운영으로 초기 자립을 위한 위탁 및 장비구입비 등이 소요될 예정이나, 관내 대부분의 약초를 수집, 집하, 전처리, 유통할 계획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농한기와 특정시기 등을 이용하여, 약초 전처리를 위한 인력이 필요한 만큼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작성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유 영 학

##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6., 2007.5.17., 2009.12.29., 2011.7.14., 2017.4.18.>

1.~2. (생략)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토산물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하. (생략)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6.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 「지방재정법」

[시행 2017.10.24.] [법률 제14919호, 2017.10.24., 일부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7.16.>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

####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8. 1. 4.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8. 1. 9.

## 2. 제안이유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과 관련한 안전점검능력(전문적인 시설, 장비, 기술인력 등)을 갖춘 법인·단체를 선정하여 옥외광고물로 인한 공중의 위해를 방지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기 위함.

## 3. 위탁개요

- 가. 대상사무: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 나.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 옥상간판
  - 돌출간판
  - 벽면이용간판
  - 지주이용간판: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간판
  -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 현수막
  - 지정계시시설

-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 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 위 광고물들의 게시시설

다. 위탁기간: 3년(2018. 3. 23. ~ 2021. 3. 22.)

바. 선정방법: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사. 소요예산: 없음

## 4.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에 따른 장점

- 전문적인 시설, 장비, 기술인력 등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한 관리로 공중에 대한 위험성을 사전 예방

나.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5조, 제16조, 제17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다. 그간 추진현황

- 2017. 12.: 민간위탁 세부추진 계획 수립

라. 향후계획

- 2018. 1. : 군 의회 동의, 모집공고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 2018. 2. : 수탁기간 선정(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
- 2018. 3. : 위·수탁 협약 체결 및 공증

##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의하여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 점검」을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르면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를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5조, 제16조에 광고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및 기준 등을 명기하고 있으며, 또한 제17조에 안전점검 업무 위탁과 그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등”을 민간위탁 할 수 있고, 이 경우 군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과 관련한 안전점검능력(전문적인 시설, 장비, 기술인력 등)을 갖춘 법인·단체를 선정하여 옥외광고물로 인한 공중의 위해를 방지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를 3년간 민간 위탁함에 따른 관련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광고물등의 안전점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의 기준·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를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과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그의 임직원을 포함한다)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건축·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사업자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검사요령,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 □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6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군수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7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군수는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 위임 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 할 수 있다.

###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 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 ① 군수는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 수탁기관 선정,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시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3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군 소속 공무원
  2. 대학교수, 변호사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구성하고, 수탁기관 선정 및 평가 등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민간위탁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2조(의회동의)

- ①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하는 경우 위탁하려는 사무의 처리 소관부서(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포함한다. 이하 “소관부서”라 한다)가 수탁기관 모집을 위한 공고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거창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8. 1. 4.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8. 1. 9.

## 2. 제안이유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 실시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 등에게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하기 위함

## 3. 위탁개요

- 가. 대상사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 나. 교육의 종류
  - 신규교육(연간 6시간)
    -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종업원 포함)
  - 보수교육(연간 3시간)
    - 옥외광고 사업자(대표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종업원 포함)
  - 행정처분 대상자(3시간) :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 사업자

다. 교육비용: 피교육자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가 납부

- 피교육생 1인당 30,000원 부담(자비)

라. 위탁기간: 3년(2018. 3. 23. ~ 2021. 3. 22.)

- 위탁기간 만료 시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 결정

바. 선정방법: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사. 소요예산: 없음

## 4.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에 따른 장점

- 옥외광고업 사업자 등의 교육과 관련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를 선정하여 체계적인 교육 실시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소양 함양과 전문성 제고

나.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
-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5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다. 그간 추진현황

- 2017. 12.: 민간위탁 세부추진 계획 수립

라. 향후계획

- 2018. 1. : 군 의회 동의, 모집공고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 2018. 2. : 수탁기간 선정(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
- 2018. 3. : 위·수탁 협약 체결 및 공증

##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거창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따르면 시장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는 자 및 제9조제2항·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전문가에게 위탁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5조에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 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선정방법 등 기준을 명시한 위탁 계획을 공고하여 위탁 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등”을 민간 위탁 할 수 있고, 이 경우 군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를 선정, 체계적인 교육 실시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소양 함양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를 3년간 민간위탁함에 따른 관련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① 시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는 자 및 제9조제2항·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옥외광고사업자 및 제9조제2항·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적어 교육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이거나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 다른 시·군·자치구와 통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등과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자격,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및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시장등이 보수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시장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을 하는 경우

3.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한 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제50조(교육의 위탁 등)** ①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49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 등으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교육의 실시방법, 수강절차, 교육비용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 □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5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5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5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

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군수는 제1항부터 제7항에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 위임 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 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 ① 군수는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 위탁기관 선정, 같은 위탁기관에 재계약 시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3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군 소속 공무원
  2. 대학교수, 변호사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구성하고, 위탁기관 선정 및 평가 등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민간위탁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2조(의회동의)

- ①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하는 경우 위탁하려는 사무의 처리 소관부서(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포함한다. 이하 “소관부서”라 한다)가 위탁기관 모집을 위한 공고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